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93호 2022. 4. 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46호 정선 군관리계획(북설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2-47호 제27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4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333호 정선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5
- 정선군 공고 제2022-352호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2-365호 2022년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22
- 정선군 공고 제2022-367호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7

- 정선군 공고 제2022-376호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고.....32
- 정선군 공고 제2022-379호 2021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38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46호

정선 군관리계획(북설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북설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정선읍 북설리 633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633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북설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북설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804	-	13,804	10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804	-	13,804	10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4	북설리 공동주택(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선읍 북설리 633번지 일원	-	증) 13,804	13,804	금회	신설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표시번호		가 구		비율 (%)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13,804	100.00
공동주택용지 (A)	소 계	-	13,804	100.00
	A-1 공동주택(아파트)	북실리 633번지 일원	13,804	100.00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주택 (A-1)	북실리 633번지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가목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자회의소,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MDF실, 기계·전기실, 방재실 등)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180%이하
		층 수	· 18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철근콘크리트 구조
		색 채	·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에 따름 · 북실리공동주택 지구단위수립지침 제26조 건축물의 색채 규정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공동주택용지 주출입구에 한하여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 (2)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3)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 (4) 지구단위수립지침 제26조 건축물의 색채 규정

구분	색채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색채 예시
	색채구분	명도	채도	색상		
공동 주택	외벽	6~8	2~4	10RP~7.5R	연한 갈색계열의 미색	
	지붕	2~4	2~3	10RP~7.5R	짙은 적갈색계열	

라. 정선 군관리계획(북설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정선군 도시과 비치)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군 고시 제2022-47호

제27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제27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정 선 군 수

0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02.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03.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04.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9.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1.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2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계획안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333호

정선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정선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능률성 제고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애산리 432-66 대지(151㎡)를 봉양리로 조정함.

3. 예고기간 : 2022. 03. 22. ~ 2022. 04. 01.(10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 전 화 : 033 - 560 - 2236
- ▷ F A X : 033 - 560 - 2590
- ▷ E-mail : doswat@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09.04.08, 개정 2009.10.20, 2011.04.20>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와 관련)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정 선 읍	봉 양 리	봉양리 일원, 종전의 애산리 중 432-66 1필지(151㎡)편입
	북 실 리	북실리 일원
	덕 송 리	덕송리 일원
	애 산 리	애산리 일원, 종전의 애산리 중 432-66 1필지(151㎡)제외
	신 월 리	신월리 일원
	덕 우 리	덕우리 일원
	여 탄 리	여탄리 일원
	회 동 리	회동리 일원
	용 탄 리	용탄리 일원
	광 하 리	광하리 일원
	굴 암 리	굴암리 일원
	가 수 리	가수리 일원

정선군 공고 제2022-352호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조성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시설의 관리·운영 등(안 제4조 ~ 제6조, 제8조)
- 다. 시설의 이용 제한(안 제7조)
- 라. 수탁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03. 25. ~ 2022. 03. 30.(5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3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전략산업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50), 팩스(033-560-2594)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전략산업과(3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하여 조성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이하 “추리본부” 라 한다)라 한다.

② 추리본부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0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란 추리본부 내에 있는 방탈출 공간, 포토존,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등) ①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리본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관리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이용료 등) ① 추리본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다자녀가정(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

-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⑤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⑥ 군수는 추리본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자가 할인권을 사용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한을 갖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추리본부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기간 등) ① 추리본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제4조 관련)

☐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체험시간	요금	비 고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체험료 (1개 테마)	회당 50분	18,000	1인 기준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전에 정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1.>

-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

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시설 2014. 12. 30.>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0.>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신설 2014. 12. 30.>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40이상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부칙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상으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365호

2022년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2022년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정 선 군 수

☐ 지원대상

- ①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현재 1년이상인 택시
- ② 일반택시 : 배기량(cc)관계없이 5년 이하차량
- ③ 개인택시 : 배기량(cc)관계없이 7년 이하차량
- ④ 신청기간내 교통사고 발생한 차량중 대·폐차 차량(1년내 중복수령 불가)
- ⑤ 사업량에 따라 조합에서 세부 지원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사업기간(신청기간) : 2022. 3. 28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량 : 2대(개인택시 1대, 일반택시 1대)

☐ 신청자격 : 정선군내에 사업장주소지를 둔 개인 및 일반택시

☐ 보조금 지원기준 : 1대당 1,5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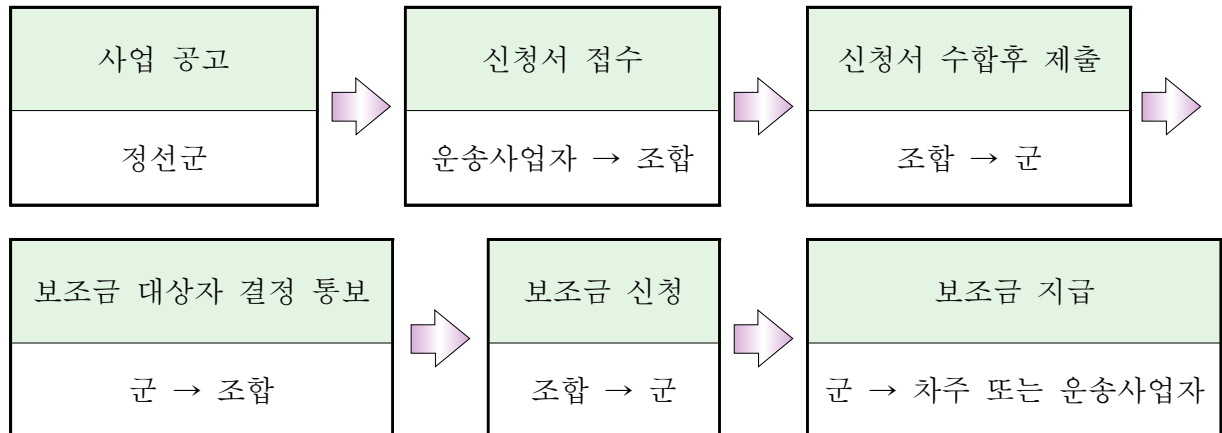
☐ 접수방법

- ① 접수기간 : 2022. 3. 28.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② 접수장소 : 개인택시조합, 일반택시조합
- ③ 접수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①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보조사업 신청서(붙임 1)
- ②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 ③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④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첨)

□ 지원절차



□ 보조사업 신청

- 노후택시 대차비용 보조사업 신청서(붙임 1)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조합 및 일반택시조합에 신청·접수
 1.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2.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노후택시 대·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는 제외

□ 보조금 지급청구

- 노후택시 대차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2)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조합 및 일반택시조합에 제출
 1. 신규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
 3.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4. 신규등록차량 사진첨부

[붙임 1]

확인번호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보조사업 신청서			
소유자	성 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개인, 일반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배기량()CC		
	차명 및 형식	/		
위와 같이 노후택시 대차비용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등 2.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확인번호	노후 대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개인, 일반
신규등록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배기량()CC		
	차명 및 형식			
	보조금신청금액	원 (₩)		
위와 같이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대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 3.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4. 신규등록차량 사진첨부				

< 별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등
- ◆ (수집 · 이용목적) 대차 보조금 지급 증빙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 · 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날인)

정선군수 귀중

정선군 공고 제2022-367호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경찰서 업무분장으로 변경 사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사를 정선경찰서 경무과장에서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함(제7조 제1항)
- 실무협의회 주관을 정선경찰서 경무과장에서 간사로 개정함(제8조 제1항)
-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독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사람으로 한자로 개정함(제8조 제3항)

3. 예고기간 : 2022. 03. 29. ~ 2022. 04. 08.(10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 전 화 : 033 - 560 - 2236
- ▷ F A X : 033 - 560 - 2590
- ▷ E-mail : doswat@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무과장”을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선경찰서 경무과장이”를 “간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를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선경찰서 <u>경무과장</u> 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 ----- <u>업무담당부서장</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u>정선경찰서 경무과장</u> 의 주관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 ----- <u>간사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실무협의회는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u>	③----- <u>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u> ---
1. <u>정선군청 총무행정관</u>	<삭 제>
2. <u>정선경찰서 경무과장</u>	<삭 제>
3. <u>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u>	<삭 제>
4. <u>정선소방서 소방행정과장</u>	<삭 제>
5. <u>노인.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u>	<삭 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정선군 공고 제2022-376호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고

1.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정 선 군 수

가.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1월 17일 ~ 2023년 06월 30일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 업 내 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강원도 정선군 신월리 일원	◦선별 : 정선선 ◦공사구간 : 왜재1종점 ◦면적 : 1,895m²	· 사업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나. 열람장소,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 열람장소 : 정선군 시설국 도시과 (033-560-2132)	2022.04.04. ~2022.04.18. (14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배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정선군 시설국 도시과(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 개요

- 사업의 명칭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 사업목적 및 효과 : 일반철도 터널내에 방재시설 보강에 따른 대책으로 터널내부에서 차량화재 또는 사고 발생시에 터널외부로 승객 대피와 응급차량 및 사고복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 사업위치 : 강원도 정선군 신월리 일원

② 사업 내용(변경)

- 사업면적 : 분할측량, 설계기준 및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면적 정정
- 열차운행중지에 따른 폐지구간 추가(2개소)
- 사업시행기간 : 본부별 용지매수 기간을 반영한 사업기간 조정
- 주요 내용 : 쇄재1종점 분할측량 면적변경

③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 사업시행 기간 : 2011년 1월 17일 ~ 2023년 6월 30일
- 사업 시행자 : 국가철도공단이사장(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④ 사업추진 경위

- 2006. 09. 22. :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고시 (국토부)
- 2006. 12. 27. : 일반철도 기존시설물 터널방재 보강대책 기본계획 수립(공단)
- 2008. 05. 26.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착수
(철도공사 위탁설계)
- 2008. 07. 22. : 착수보고회 개최(철도공사)
- 2008. 10. 06. : 설계안 지사별 협의 착수(철도공사)
- 2009.12.29~2010.12.31 : 실시설계 성과물 인수 (공단)
- 2009. 01. : 예결위 의견에 따른 공사·공단간 업무처리방안 조정* (국토부)
* (당초) 철도공사 위탁시행 → (변경) 공단 직접시행
- 2011. 01. 17. : 사업실시계획 최초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호)
- 2013. 12. 20.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고시 (국토부)
- 2014. 10. 13. :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8호)
- 2016. 01. 22. :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호)
- 2016. 10. 13. :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8호)
- 2017. 10. 25. : 사업실시계획 변경(4차)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81호)
- 2019. 04. 08. : 사업실시계획 변경(5차)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476호)
- 2020. 07. 16. : 사업실시계획 변경(6차)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9795호)

⑤ 터널별 사업비 현황

담당본부	선 별	터널명		사업비 현황(백만원)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충청 본부	경부선	증약	시점	272	272		
		증약	종점	408	408		
	충북선	인등	시점	146	146		
			종점	394	394		
			사갱	591	591		
소 계	당초	3	5	1,811	1,811		
	변경	3	5				
호남 본부	호남선	목포	시점	115	115		
			종점	70	70		
		노령제2	시점	139	139		
			종점	75	75		
		약곡	시점	93	93		
			종점	61	61		
		오룡	시점	89	89		
			종점	116	116		
	전라선	슬치	시점	83	83		
			사갱	682	682		
			종점	77	77		
		병풍	시점	177	177		
			종점	55	55		
		임실	시점	99	99		
			종점	70	70		
		오지	시점	74	74		
			종점	77	77		
		송정	시점	289	289		
			종점	148	148		
		인화제2	시점	157	157		
			종점	80	80		
		화정	종점	92	92		
		남원	시점	72	72		
			종점	201	201		
		조사	시점	123	123		
			종점	95	95		
		오수	시점	60	60		
			종점	89	89		
	경전선	화방	시점	251	251		
			종점	83	83		
	대불선	대불	시점	97	-	감) 97	적정성 재검토
			종점	197	-	감) 197	적정성 재검토
	제철선	현월	시점	101	101		
			종점	81	81		
소 계	당초	17	34	4,368	4,074		
	변경	16	32				

담당본부	선 별	터널명		사업비 현황(백만원)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영남 본부	경부선	성현	시점	233	233		준공정산
		성현	종점	147	147		준공정산
		신도	시점	274	274		준공정산
			종점	104	104		준공정산
		밀양	시점	151	151		준공정산
			종점	178	178		준공정산
	진해선	장복산	시점	367	367		준공정산
			종점	266	266		준공정산
	경전선	권영	사점	-	-		경전선 삼랑진~진주 건설사업에 반영
소 계	당초	5	8	1,720	1,720		
	변경	5	8				
강원 본부	태백선	정암	시점	39	39		
			종점	5	5		
		수리재	시점	184	184		
			종점	5	5		
		연화제1	시점	254	254		
			종점	256	256		
	영동선	밤재	시점	206	206		
			종점	84	84		
		성계	종점	2	2		
	정선선	쇄재1	종점	1276	1276		
	함백선	함백1	시점	62	62		
			종점	50	50		
	중앙선	금태2	사점				폐선예정 *사유: 중앙선 원주~제천 건설사업 시행(20년 완료)
		차악	사점				
			종점				
		매포	사점				폐선예정 *사유: 중앙선 도담~영천 건설사업 시행(20년 완료)
			종점				
		태강	사점				
			종점				
		죽령	사점				
			종점				
		업동	사점				
	중앙선	금계	사점				
			종점				
소 계	당초	7	12	2,423	2,423		
	변경	7	12				
수도권 본부	안산선	안산	시점	492	492		
			종점	146	146		
소 계	당초	1	2	638	638		
	변경	1	2				
합 계	당초	33	61	10,960	10,666	감) 294	
	변경	32	59				

⑥ 정선군 사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100) () ~ ()m 까지	비고
				원면적	편입	구분 지상권			
정선군 합계				367	367				
1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9-3	전	329	329				
2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산202-5	임	38	38				

정선군 공고 제2022-379호

2021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정 선 군 수

1. 재난관리실태 공시 총괄

- ◆ 2021년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전년대비 발생횟수 및 피해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실적입니다.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4개과 133명으로 자연재난 및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응하였으며,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2016~2017 일제정비를 거친 후, 재난영상감시 시스템(cctv) 등을 보완하여 총 9종 17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주민 등 3,3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 신속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감염병 등 주요 재난별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8억5천9백만원이 감소한 총 413억8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급경사지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배수로 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일웬스 등 4종의 환경 방재물자와 호우피해 등에 대비하여 마대 등 7종 27,190점의 수방자재를,
 - 의료시설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및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 38개소에 199개의 병상과 의사 32명, 간호사 100명의 응급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주민 20,014명을 대피·수용할 수 있는 60개소의 임시 주거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조장비로는 사다리차와 구조공작차, 배연차 그리고 드론 1기를, 응급복구 장비는 덤프, 굴삭기 등 303대, 산불진화헬기 1대 임차배치 및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 2,060점(대)의 진화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재난복구 및 대응관련 인력(기능)은 토목, 건축, 전기 등에 62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등 특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 6,986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시설 108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은 4개소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은 전력통신시설에 대한 면진테이블을 설치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해당연도 재난관리 기금적립액은 4억1천만원으로 법정기준액의 110%를 확보하였으며,
- 2021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15억7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2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는 2등급으로 지난해(A등급)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 그 밖에, 군민들의 생활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보장 장치로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돕는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 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과 구조적인 재난대응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며,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정선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단위 : 건 / 천원)

일시	재난(피해)원인	피 해 내 용	복 구 내 용	추진사항
해	당	없	음	

☞ 피해발생 증감원인

- 2021년은 재난발생이 없어 전년대비 발생횟수 및 피해규모가 감소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조직의 구성



※ 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감염병, 가축전염병 포함)

○ 정원

(단위 : 명)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34	134	-	5	31	41	39	18	-
	현원	133	133	-	4	55	30	28	14	2
농 업 축산과	정원	20	20	-	1	7	6	4	2	-
	현원	19	19	-	1	7	5	4	2	-
안전과	정원	21	21	-	1	5	6	6	3	-
	현원	25	25	-	1	7	7	6	4	-
건설과	정원	21	21	-	1	6	5	5	4	-
	현원	22	22	-	1	7	5	1	6	2
보건소	정원	72	72	-	2	13	24	24	9	-
	현원	67	67	-	1	34	13	17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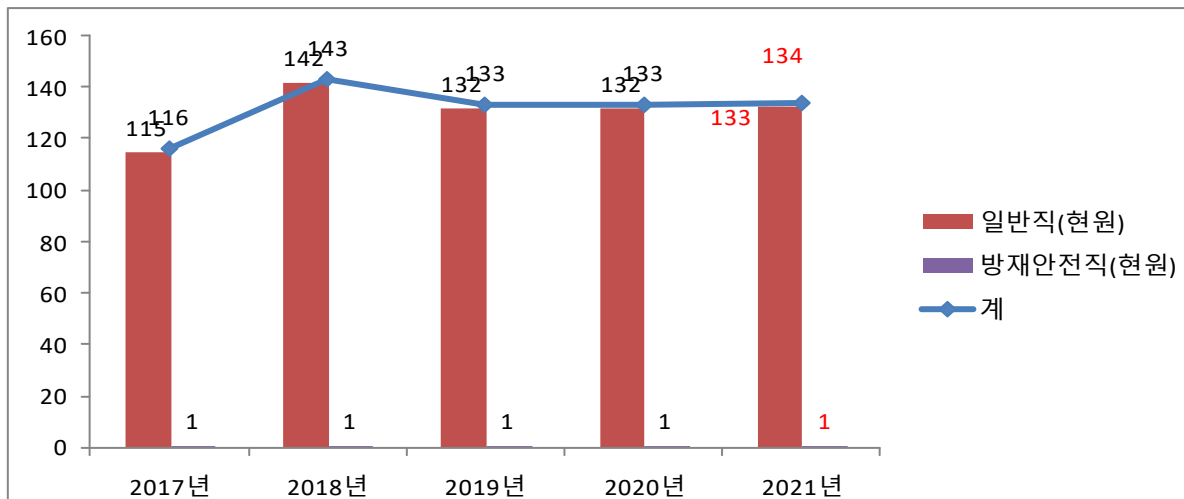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	2	-	-	-	-	2	-
	현원	1	1	-	-	-	-	1	-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109	115	142	132	132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1	1	1	1	1



☞ 정선군 조직개편으로 조직 정원이 2019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현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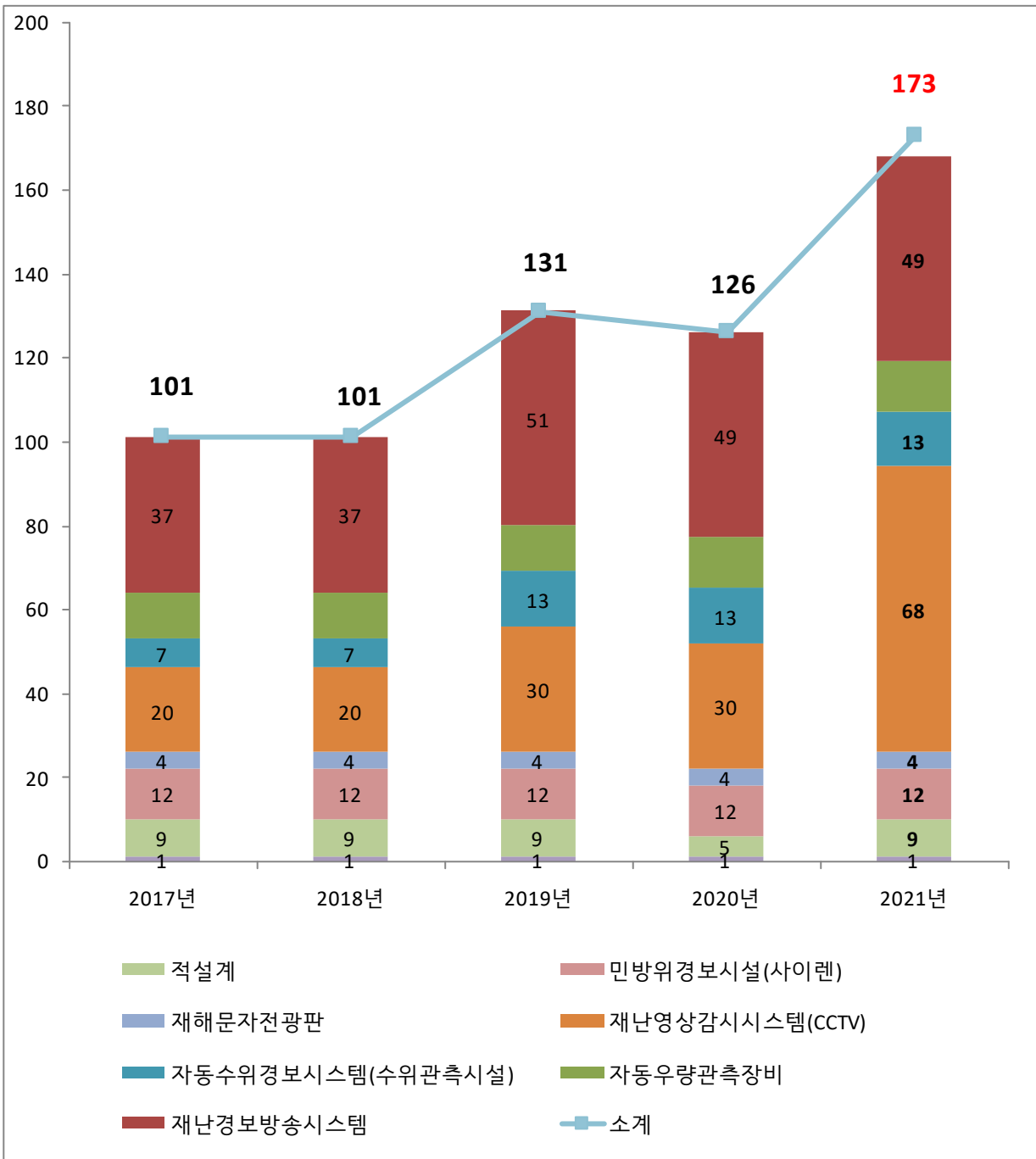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재난경보방송시스템	49	가수리경로당 외 48개소
자동우량관측장비	12	정선군청외 11개소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13	정선2교외 12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8	역전배수펌프장외 67개소
재해문자전광판	4	임계면사무소외 3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2	정선군청외 11개소
위성전화기	5	정선군청
지진가속도계측기	1	정선군청
적설계	9	임계면 백복령외 8개소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1	101	131	126	173
재난경보방송시스템	37	37	51	49	49
자동우량관측장비	11	11	11	12	12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7	7	13	13	1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0	20	30	30	68
재해문자전광판	4	4	4	4	4
위성전화기	-	-	-	5	5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2	12	12	12	12
적설계	9	9	9	5	9
지진가속도계측기	1	1	1	1	1

※ 정선군 자체 설치 현황임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증감원인

-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추가설치함.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교육·훈련

(단위 : 명)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안전 힐링과정	10.12~10.1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통신망관리과정	9.9~9.1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10기 재난구호일반과정	10.25~11.0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10기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 및 재난대응과정	10.25~11.0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10기 재난관리총론과정	10.25~11.0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10기 재난안전법령과정	10.25~11.0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2기 ndms 재난구호시스템과 모바일 재난관리포털의 이해	2.18~3.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2기 재난안전법령과정	2.18~3.1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2기 사회재난복구제도의 이해	2.18~3.1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기후변화와 재난관리과정	11.4~1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관리총론과정	11.4~11.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구호일반과정	11.5~11.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11기 생활안전과정	12.14~12.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안전점검실무과정	6.4~6.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5.12~5.1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	
제 11기 ndms 재난구호시스템과 모바일 재난관리포털의 이해	12.6~12.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8기 재난관리총론과정	8.17~9.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과정	2.24~3.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정	10.26~11.0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구호 일반과정	6.29~7.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비상대비업무신규담당자과정	7.5~7.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1. 4. 9.	강원도청	3	지역자율방재단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읍·면 구성확대 대책회의	강원도	
`21. 8. 5.~ 8. 6.	재난안전교육	1	제2기 지역자율방재단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	온라인
`21. 11. 30.	천안 상록리조트	2	2021년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강화 교육	행정안전부	
`21. 12. 15.	재난안전교육	1	제2기 지역자율방재단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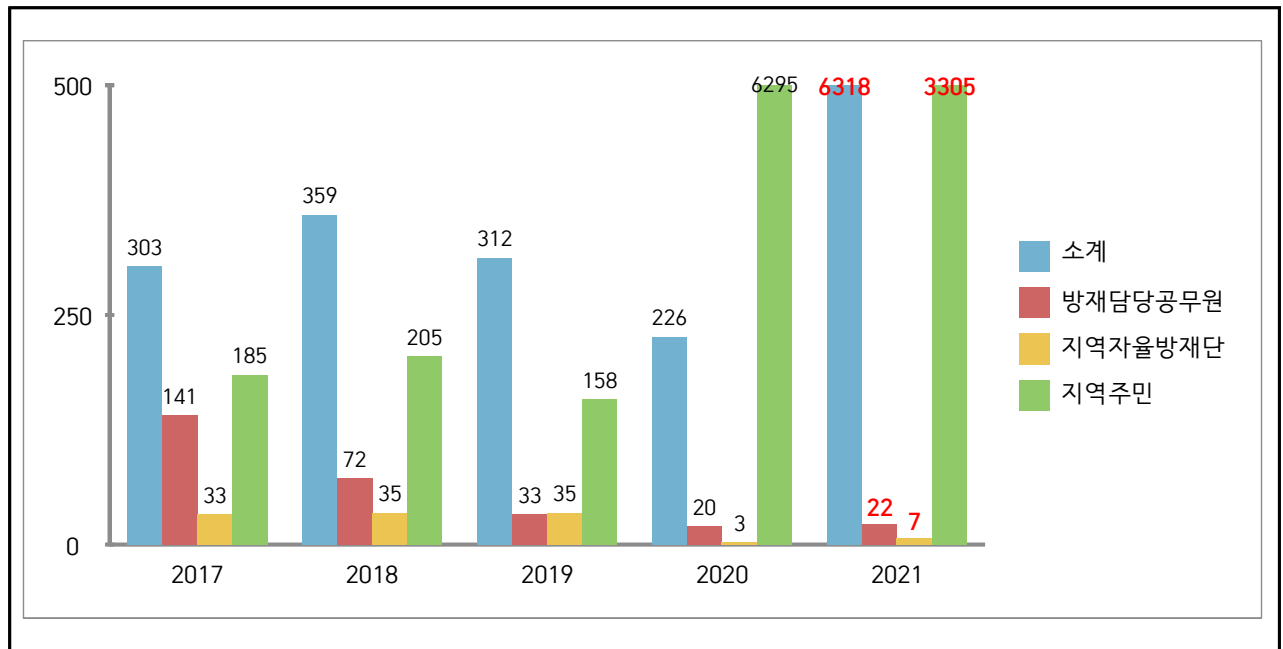
○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심폐소생술 교육	' 21년도 연중	다중이용시설 및 복지시설	1,250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	정선군 정선소방서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 21.6.1 .	정선소방서	49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정선군 정선소방서	
완강기 체험 및 미래소방관 교육	' 21년도 연중	정선소방서	570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학생진로체험	정선군 정선소방서	
아동·청소년 흡연 및 음주예방 교육	' 21.10 월	12개 초등학교	1,018	흡연, 음주 예방교육	정선군 보건소	
꿈나무 흡연예방 교육	'21. 4월	13개 유치원, 어 린이집	418	흡연예방교육	정선군 보건소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59	312	226	6,318	3,334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교육	141	72	33	20	22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33	35	35	3	7
지역주민 교육·훈련	185	205	158	6,295	3,305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전문성교육 취소 또는 규모 축소로 교육 참석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민 대상 안전교육은 찾아가는 강의형 교육을 주로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학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음.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참석인원이 감소함.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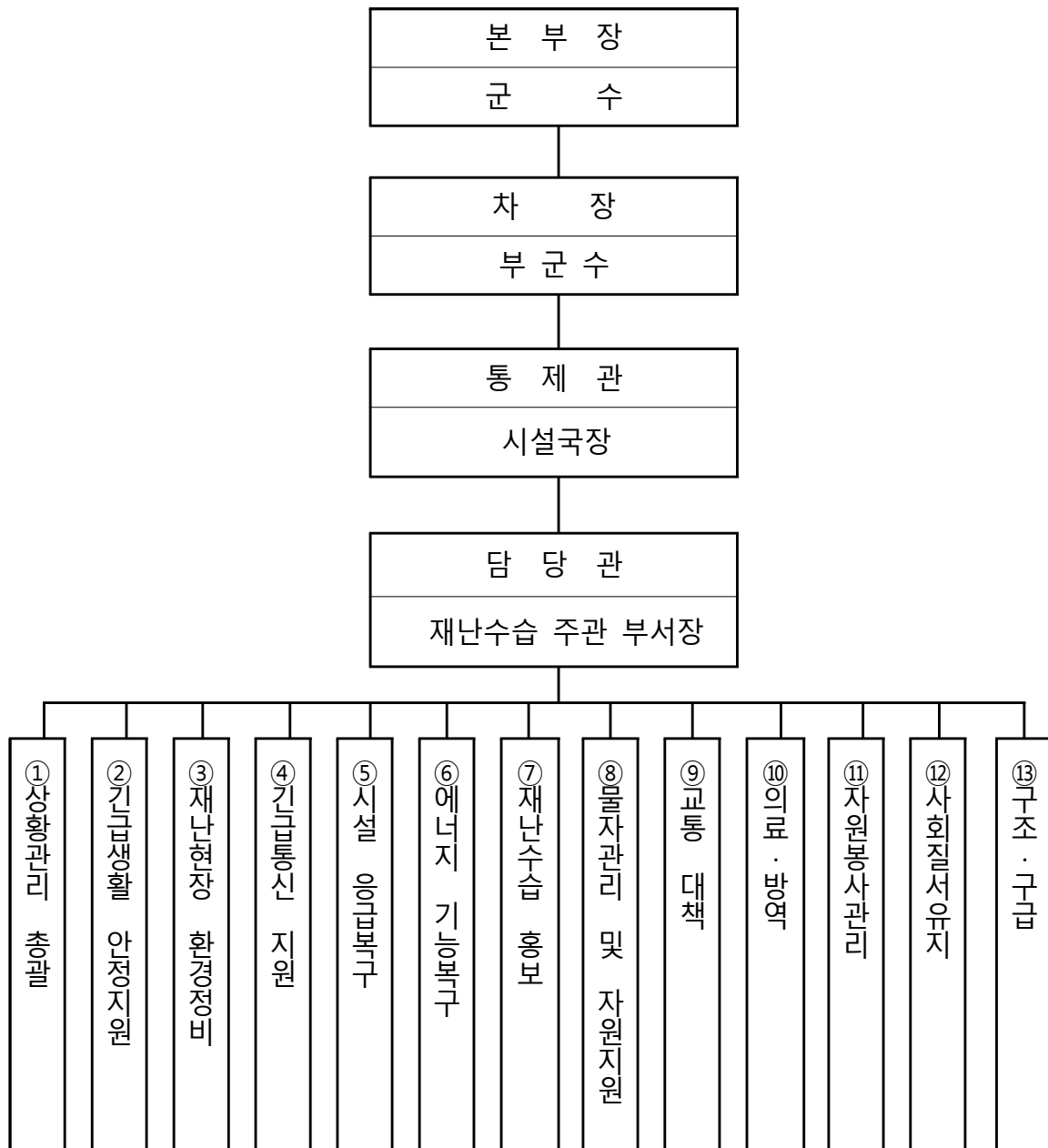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①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1조	• 위원장 : 군수 • 위 원 : 11인	•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및 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 11조 제 3항	• 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 11인	•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안전 사전검토 • 재난관련기관 협조사항 처리 • 안전대책위원회 효율적인 운영도모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 16조	• 지역본부장 : 군수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 18조	• 상황실장 및 반원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 사고수습대책 추진상황의 확인 • 재난관련 언론보도사항 확인보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 20조	• 상황실장 및 반원	•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군수→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 19조	• 상황실장 및 반원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에 신고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



※ 협업기능 및 실무반은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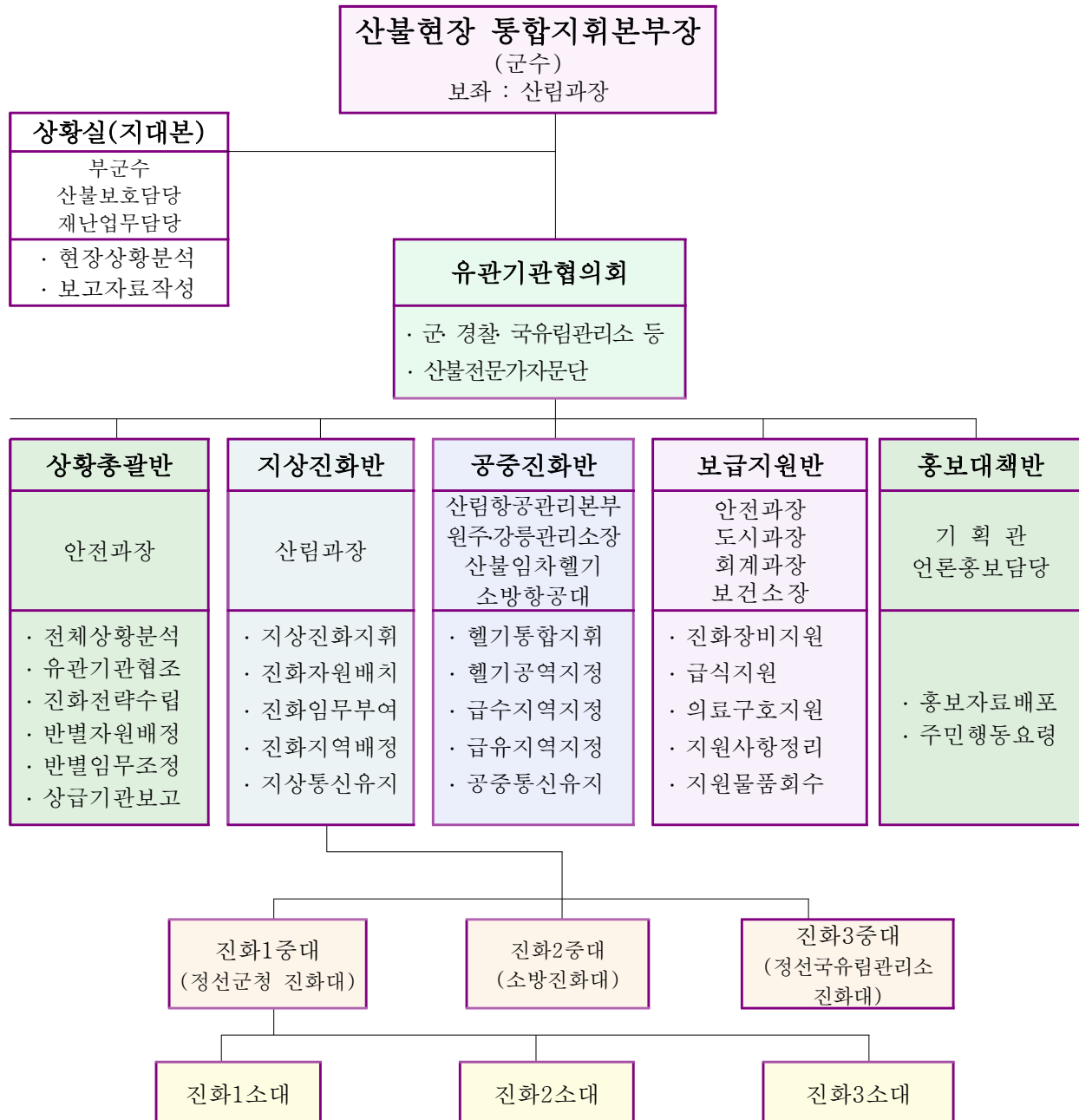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복지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총무행정관)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전략산업과)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기획관)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유지(안전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 교통수단 지원(안전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총무행정관)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관리(총무행정관, 경찰서)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안전과, 소방서)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②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 정선군 감염병 방역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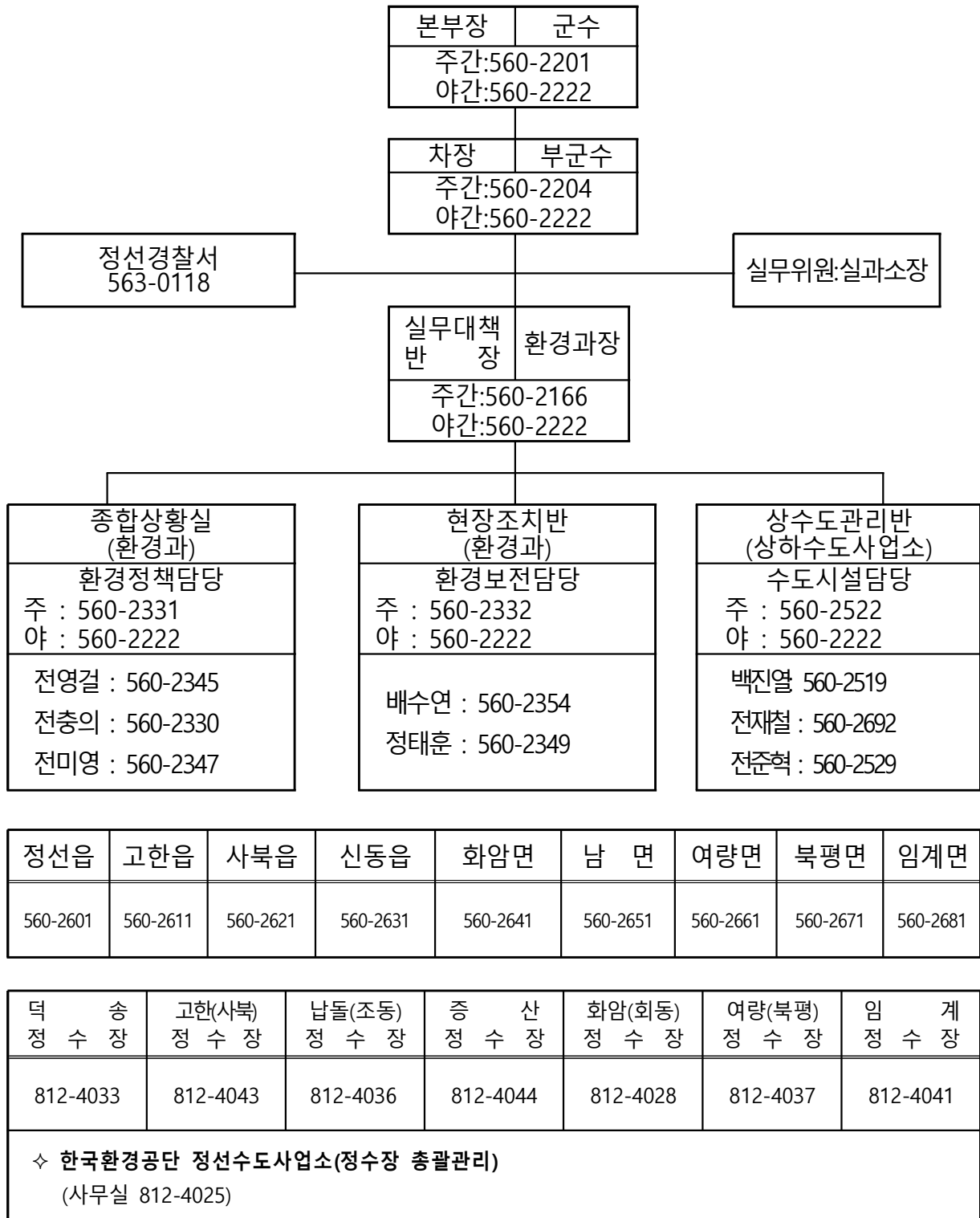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나. 팀별 임무 및 역할

구성	임무 및 역할	관련부서
총괄팀	○ 방역대책수립 및 질병관리본부, 강원도와 업무협조 ○ 환자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관리 ○ 환자이송 및 검체 수송 ○ 지역내 격리병원 지정 및 격리시설 관리 ○ 지역내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협조체계 유지 ○ 질병정보 및 예방관리수칙 홍보 ○ 개인보호장비(N-95마스크, 보호복, 장갑, 고글등) 수급 관리	감염병관리
역학조사팀	○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 자가격리자 관리 및 지원 ○ 퇴원환자관리	위 생
방역소독팀	○ 지역내 감염지역 소독 (환자집, 환자이동구간, 구급차량, 보건소 등)	예방의약
행정지원팀	○ 차량 및 인력지원 (구급차, 운전원)관련 행정업무 ○ 방역물품구입 및 격리환자 관리물품 지원 ○ 예산지원 및 집행	보건행정
소내지원팀	○ 선별진료소운영 ○ 정신건강상담 지원 ○ 기타지원사항(인력, 접촉자 추적관리 등)	건강생활

○ 수질오염사고 대책반 구성도



③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정선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 발생재난의 상황파악 유지 및 보고 -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초동대처 지도	1997.09.26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2005.03.22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005.03.22	
정선군 재난예·경보 운영규정	-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2006.02.13	
정선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2006.03.31	
정선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제한으로 인명피해 예방	2007.04.17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여름철 물놀이 행락객 인명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2.05.30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2013.06.0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재해영향사전검토 및 저감대책 마련	2013.07.3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구축	2013.12.11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18.04.16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전보험 운영 규정 마련	2018.10.05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반 시설의 관리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	당	없	음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가) 재난방지시설 정비실적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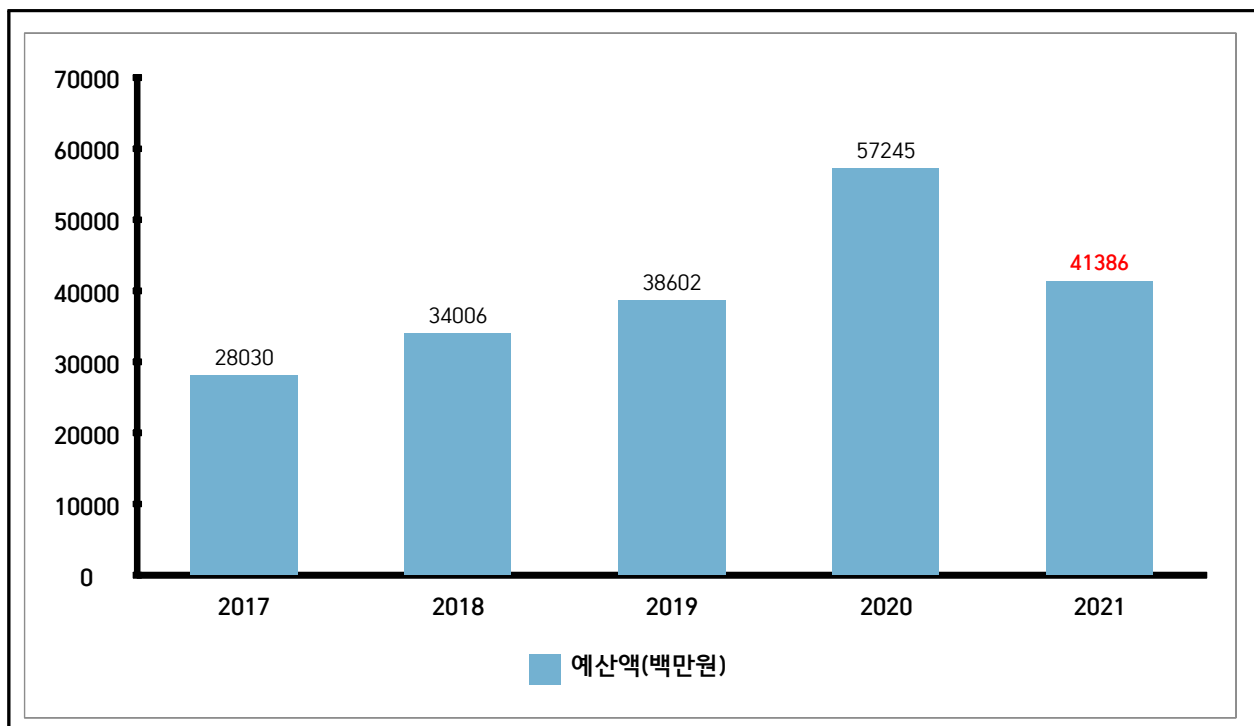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정비목적
급경사지 정비사업	정선읍	봉양2, 향교 급경사지 정비	2021년	2,530	급경사지 재해예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동읍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2021년	1,200	재해위험지 재해예방
재난예경보시설 운영관리	정선읍 외 8개읍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123개소	2021년	600	재난정보 홍보
배수펌프장 운영	정선읍, 북평면	배수펌프장 8개수 운영관리	2021년	355	침수재해 방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지장천	하천정비 L=2.12km,	2021년	3,747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신동읍, 북평면	호안정비 L=2.0km,	2021년	1,311	소하천재해예방
하천, 소하천정비	정선읍 외 8개읍면	준설 및 유지관리	2021년	2,200	하천·소하천 재해예방
군도 확포장 정비	정선읍 외 8개읍면	군도 정비	2021년	3,330	교통재난 예방
농촌생활 용수개발	정선읍 외3개 읍면	생활용수개발	2021년	190	가뭄예방 및 생활용수공급
농경지 배수로정비	정선읍 외8개 읍면	배수로정비	2021년	1,30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임계면	지표수 보강개발	2018-2022년	4,186	가뭄예방 및 생활용수공급
수리시설정비	정선읍 외5개 읍면	수리시설정비	2021년	40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농업기반정비 및 유지보수	정선읍 외4개 읍면	배수로	2021년	45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21년	6,319	안정적 하수 처리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	정선군 관내 9개 읍·면	하수관로 유지관리	2021년	360	누수재해예방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신동, 여량, 광하, 남평, 하동	처리용량 신·증설	2021년	9,473	하수처리시설 사고 예방
하수관로 정비	고한읍, 사북읍, 남면	하수관로 설치	2021년	3,435	누수재해예방 및 하수 처리 안정화

○ 재난방지시설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2017 ~ 202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8,030	34,006	38,602	57,245	41,386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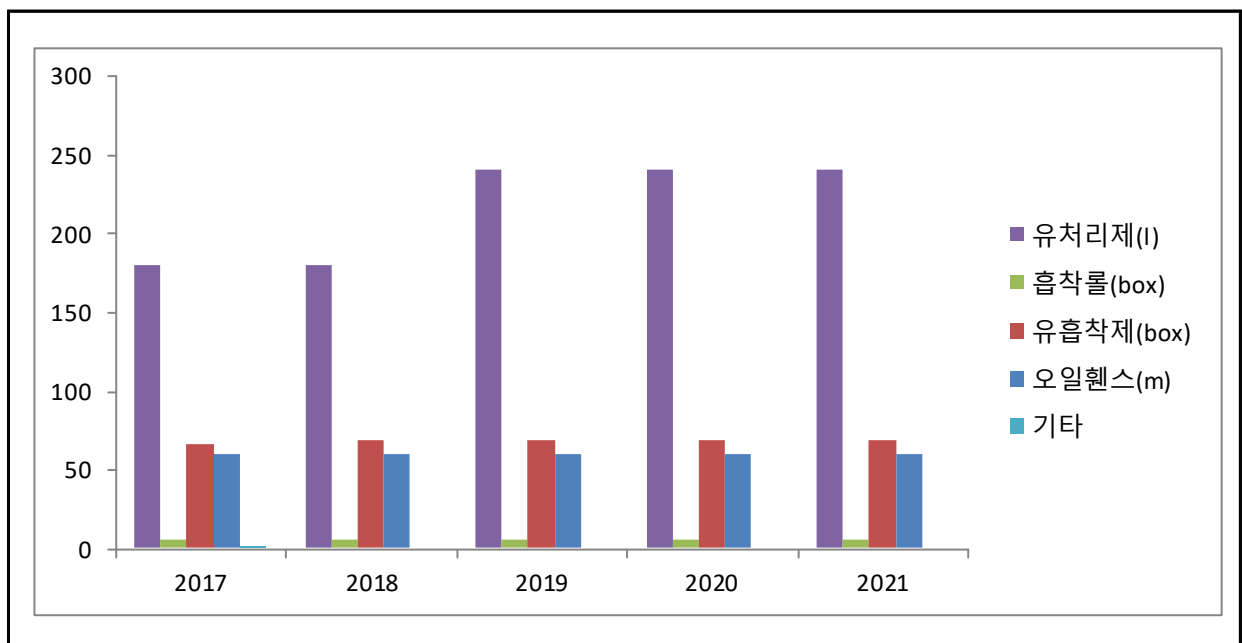
- 202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자연재난의 피해가 적어 예산이 15,859백만원 감소함.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방재물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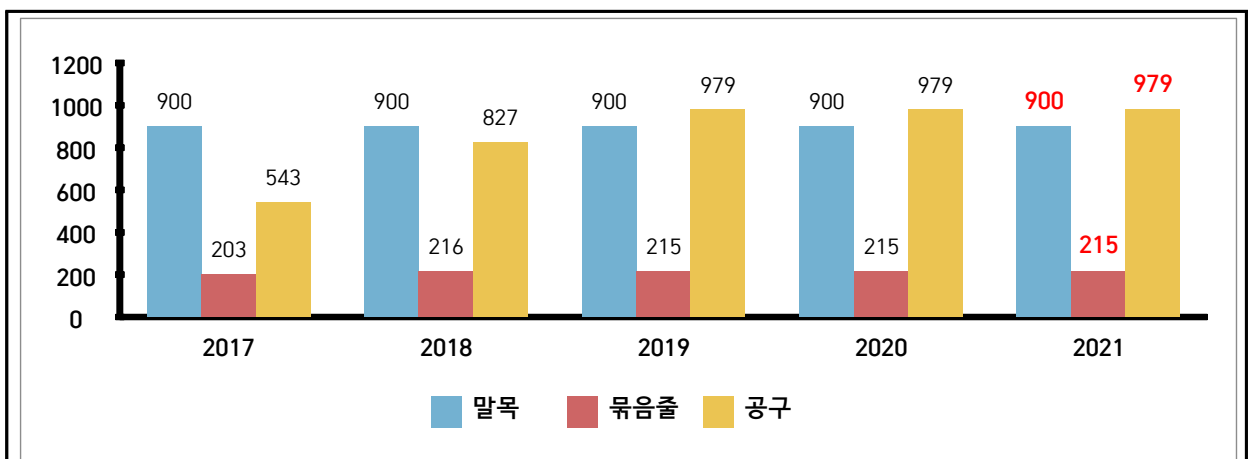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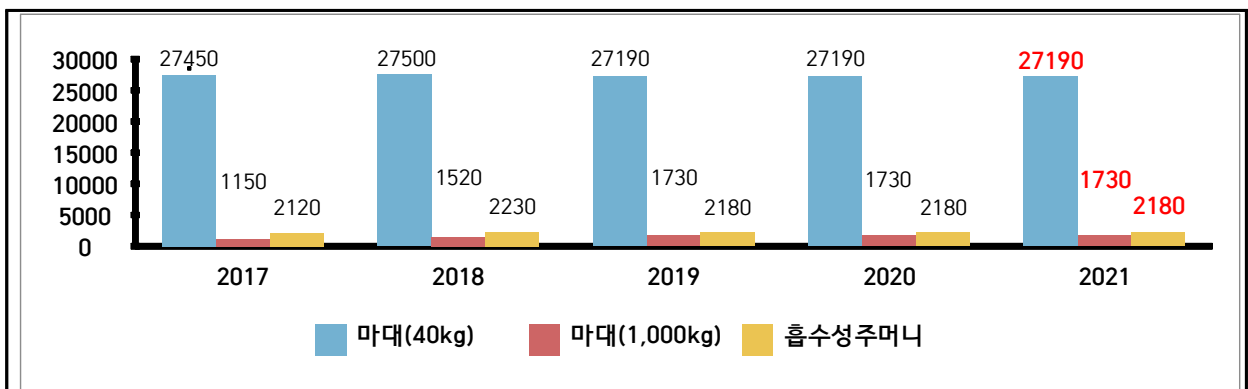
계	오일웬스 (m)	유흡착제 (BOX)	흡착물 (BOX)	유처리제 (ℓ)	기타
총계	60	68	6	240	보호의 121, 소석회 3,000kg

방재물자 종류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13	314	374	374	374
오일웬스(m)	60	60	60	60	60
유흡착제(BOX)	68	68	68	68	68
흡착물(BOX)	5	6	6	6	6
유처리제(ℓ)	180	180	240	240	240
기 타	보호의 60, 소석회 3,000kg	보호의 60, 소석회 3,000kg	보호의 81, 소석회 3,000kg	보호의 81, 소석회 3,000kg	보호의 121 소석회 3,000kg



○ 수방자재 연도별 현황

수방자재 종류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마대(40kg)	27,450	27,500	27,190	27,190	27,190
마대(1,000kg)	1,150	1,520	1,730	1,730	1,730
비닐(PE필름)	230	206	251	251	251
흡수성주머니	2,120	2,230	2,180	2,180	2,180
말목	900	900	900	900	900
묶음줄	203	216	215	215	215
작업공구	543	827	979	979	979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 방재물자의 수량은 사용 및 보충 구매에 따른 증감이 있고 수방자재의 경우 매년 각 읍·면별 부족분에 대하여 파악하여 목표 비축량에 맞추어 구입·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외 필요한 물품은 예산범위에서 별도 구입·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증감원인은 없음.

○ 의료시설 현황

※조무사 제외, 공무원 포함

구분	개소	의사 (명)	간호사 (명)	구급차 (대)	병상수 (개)	영안실 (실)
합 계	38	32	100	3	199	2
병 원	19	14	56	-	199	2
보건소	1	4	23	3	-	-
기타(지소 및진료소)	18	14	2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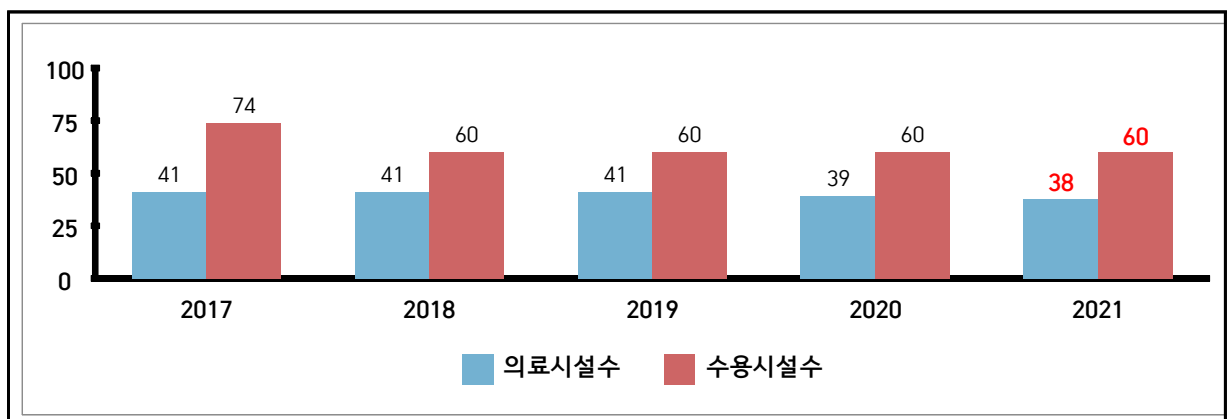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수용시설	60	20,014	20	16,880	0	0	35	1,281	0	0	5	1,853

○ 의료시설 및 임시주거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의료시설수		41	41	41	39	38
수용시설	개소	74	60	60	60	60
	수용인원	30,300	19,701	20,014	20,014	20,014



☞ 의료시설수는 전년도 대비 1개 감소하고, 수용시설은 전년도와 동일함.

(나) 장비 지정 현황

○ 구조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비고
15	1	2	11	-	드론1

○ 복구장비

(단위 : 대)

구분	계	덤프 (15톤)	굴삭기 (6종)	그레이더	로우더	소형 덤프	추레라	기타
총계	303	3	34	1	2	14	1	248 엔진펌프32 수중펌프5 기타장비 211

○ 산불진화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기 타
2,060	0	1	12	8	2039

○ 기타장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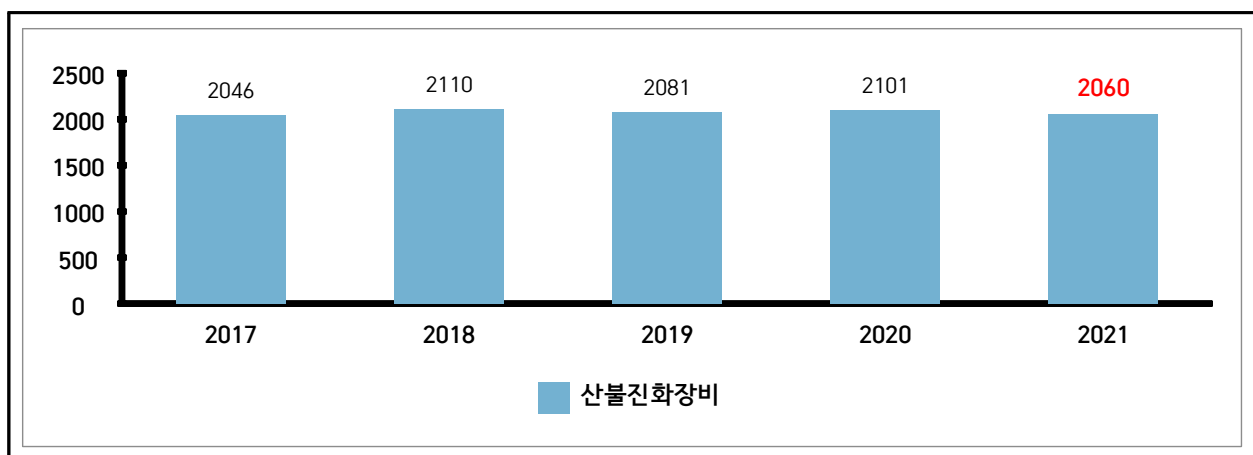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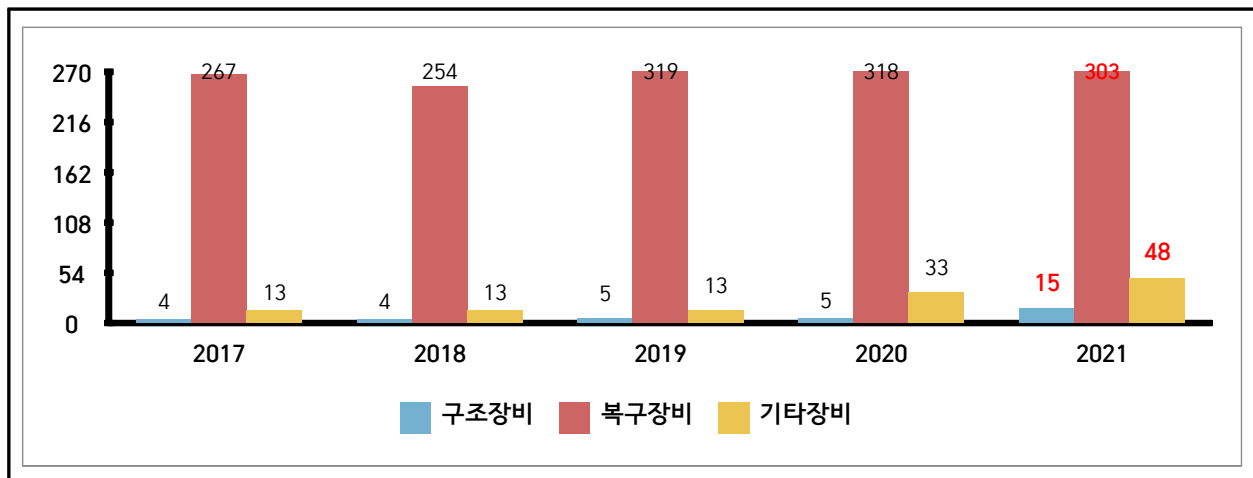
(단위 : 대)

계	유압구조장비	양수기	발전기	동력절단기	체인톱	비 고
48	10	8	2	13	15	

○ 연도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구조장비	4	4	5	5	15
복구장비	267	254	319	318	303
산불진화장비	2,110	2,110	2,081	2,101	2,060
기타장비	13	13	13	33	48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구조장비(배연차)를 보강하였으며, 유압구조장비, 동력절단기, 체인톱 등 신규 장비 구입으로 기타장비 현황이 증가함.

(다) 인력 지정 현황

○ 기술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토목	건축	전기	농업	전산	보건	기타
인원	10	2	3	2	-	-	-	3

○ 기능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전기공	통신공	중기운전	기타
인원	52	1	1	35	15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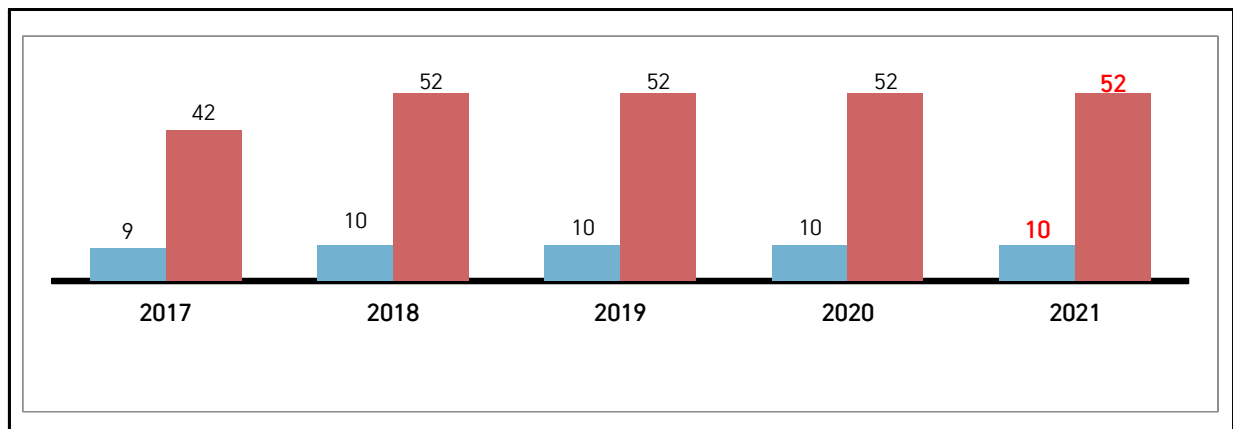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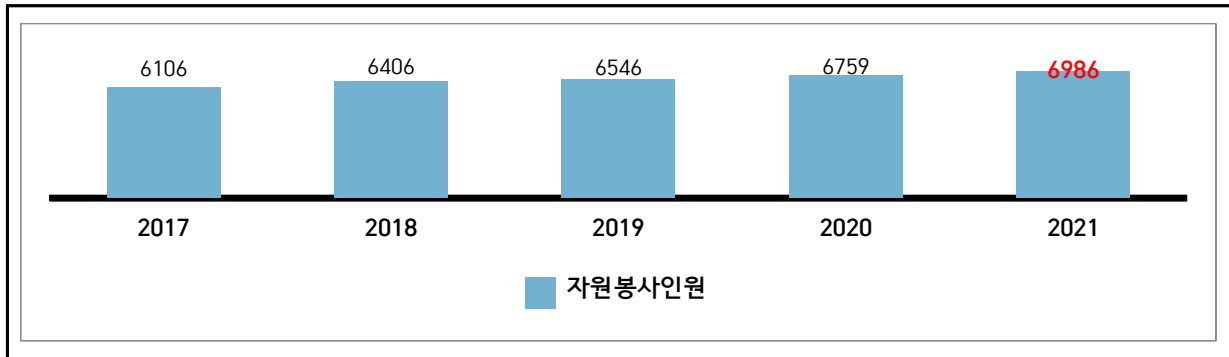
계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여성단체 협의회	자율방 범대	기 타
6,986	249	133	25	60	12	523	5,984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원봉사단체	6,106	6,406	6,546	6,759	6,986





인력지정 증감원인

- 기술·기능인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자원봉사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19 식중독 예방관리	'21.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	4	4	설계용역	39	1%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내진율	8.8%	8.8%	1%	1.8%	1%

- ※ 내진설계 적용 : 관련 법령이 제정된 후 설치되어 내진설계가 적정하게 반영된 건축물 (시설물)
- ※ 내진성능 확보 : 기존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평가되는 건축물(시설물)
-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 ※ 내진보강 : 건축물(시설물) 건축시 내진보강이 적용되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
- ※ 투자사업비 : 내진보강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합산한 금액임

☞ 내진실적 및 내진을 등이 저조한 이유

-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대상시설물 15개소의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 추진중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 성능확보 추진 예정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부	여	여	
종합상황실	부	여	여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해당없음)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해 당 없 음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해	당	없	음	
지구수(개소)					
긴급대피장소(개소)					
경보시설(개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최저적립기준액(①)	적립액(②)	확보율 (②/①×100)
410백만원	451백만원	110%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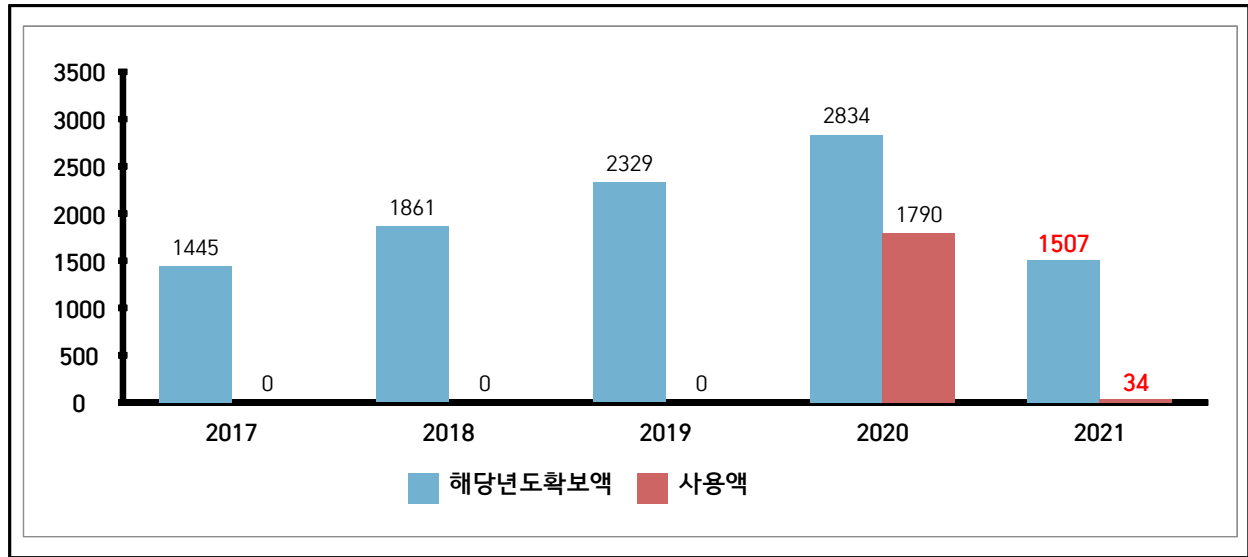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확 보 액		1,445	1,861	2,329	2,834	1,507
사 용 액	계	-	-	-	1,790	34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	-	-	-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	-	-	-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	-	-	-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	-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	-	-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복구	-	-	-	1,790	34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가 원인

- 2021년 재난관리 기금 최저적립액은 4억1천만원이고 이에 4억5천1백만원을 적립하여 110%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15억7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3억2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확진자 경유 시설 방역소독비 지급 등으로 총 3천4백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비 사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현황

○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현황

행동 매뉴얼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설해)	건설과	2006.12.27	풍수해(설해)재난 행동요령
지진	건설과	2006.12.27	지진재난 행동요령
대형화산폭발	건설과	2014.3.	대형화산폭발 행동요령
가뭄	건설과	2015.11.12	가뭄재난분야 행동요령
산불	산림과	2006.12.27	산불재난 행동요령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과	2014.4.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행동요령
대규모수질오염	환경과	2014.4.	대규모 환경(수질)오염 행동요령
댐붕괴	건설과	2014.9.	댐붕괴 행동요령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과	2014.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동요령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전략산업과	2016.1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행동요령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시과	2016.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행동요령
가축질병	농업축산과	2006.12.27	가축질병 행동요령
감염병	보건소	2006.12.27	감염병분야 행동요령
전력	전략산업과	2016.10	전력시설물 피해 행동요령
보건의료	보건소	2006.12.27	응급의료분야 행동요령
식용수	상하수도사업소	2007.8.29	식용수분야 행동요령
육상화물운송	안전과	2006.12.27	육상화물 운송분야 행동요령
가스	전략산업과	2016.10	가스시설물 피해 행동요령
문화재사고	문화관광과	2018.1.1	문화재사고 대응 행동요령
산사태	산림과	2018.4.5	산사태 분야 행동요령
한파	건설과	2019.02.27	한파 분야 행동요령
폭염	건설과	2019.4.19	폭염 분야 행동요령
초미세먼지	환경과	2019.10.	미세먼지 피해 행동요령
경기장 및 공연장사고	문화관광과	2020.9.1	경기장 및 공연장사고 행동요령

○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다중밀집시설 대형붕괴 현장조치	2021.9.3	비상연락망, 주민대피 행동요령 정비	
공연장 안전사고 현장조치	2021.1.4	비상연락망, 현장상황 반영	
산사태 위기관리	2021.8.30	주민대피 세부지침 및 비상연락망 정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2021.9.9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기름	2021.9.3	비상연락망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사항	
대규모 수질요염	2021.9.9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댐 붕괴	2021.2.28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021.12.14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연락망 현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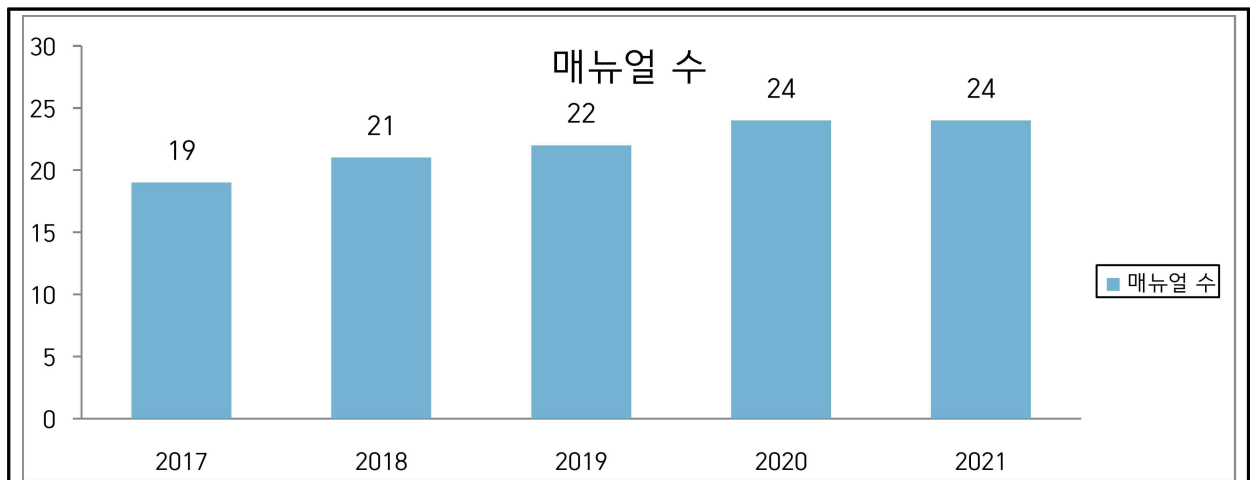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가축질병 현장조치	2021.11.23.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위기 경보 단계 조정	
감염병 위기관리	2021.7.14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행동매뉴얼 수정	
전력 사고	2021.9.02	담당자 현행화	
보건의료분야	2021.9.07	행동매뉴얼 현행화	
식용수 사고	2021.9.17	기관 및 부서명칭, 연락망 현행화	
육상화물 운송사고	2021.9.9	비상연락망 현행화	
문화재 사고	2021.9.9	인사이동에따른 비상연락망 현행화	
풍수해 재난	2021.9.3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수록	
지진, 지진해일	2021.9.3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수록	
대형화산폭발	2021.9.3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수록	
가스	2021.9.2	비상연락망 현행화	
초미세먼지	2021.9.9	행동매뉴얼 정비	
한파	2021.9.3	CBS긴급재난문자 송출사항 수정	
폭염	2021.9.3	CBS긴급재난문자 송출사항 수정	
산불	2021.12.10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반영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2021.9.8	비상연락망 현행화	

○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해	당	없	음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뉴얼 수	19	21	22	2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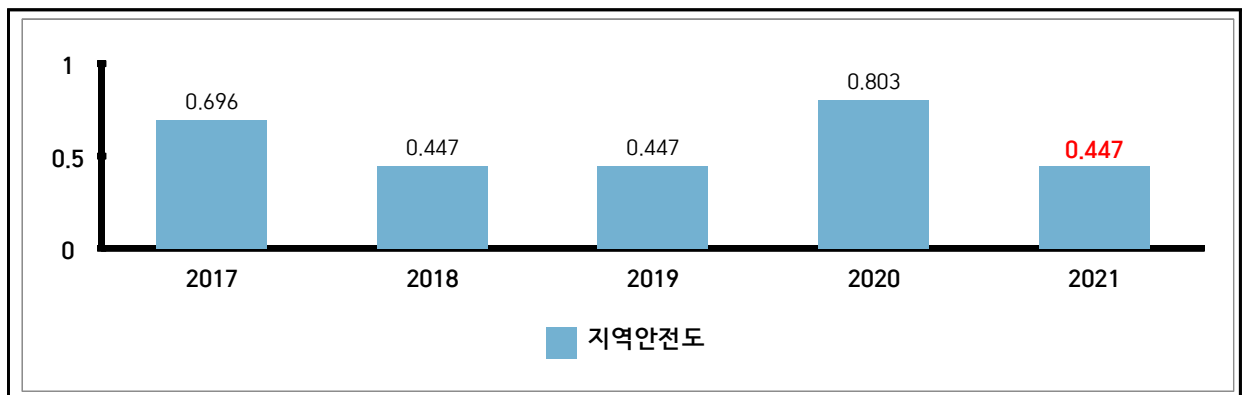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
진단결과	0.434	0.909	0.940	0.447	2

○ 연도별 진단결과

구 분	평가항목			지역 안전도	등급	비고
	위험환경	위험 관리능력	방재성능			
2016년	0.458	0.553	0.830	0.702	8	
2017년	0.506	0.553	0.830	0.696	7	
2018년	0.434	0.909	0.940	0.447	2	
2019년	0.434	0.909	0.940	0.447	2	
2020년	0.434	0.894	0.902	0.803	A	A~E등급
2021년	0.434	0.909	0.940	0.447	2	1~10등급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전년도에 비해 위험환경 부분에서는 등급을 유지, 위험관리능력 및 방재성능은 높은 성적으로 2등급(0.447)을 받음.

바.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풍수해보험

(가) 풍수해보험 개요

-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대설 등)로 인한 재난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군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온실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5~92% 정부지원
-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지원

(나)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정부지원				군비추가 지원	홍보비
		소 계	국비	도비	군비		
2020년	187,053	47,053	-	14,116	32,937	120,000	20,000
2021년	273,500	84,500		25,350	59,150	170,000	19,000

※ 우리군에서는 일반가입자 주택과, 영농목적의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대한 개인부담분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추가지원 시책 추진

(다) 가입현황

(단위 : 동, m²)

구 분	주택보험 가입현황			온실보험 가입현황			비 고
	대상 가구	가입 건수	비율(%)	대상 면적	가입 면적	비율(%)	
2020년	7,776	612	7.8	361,000	263,216	72.9	
2021년	20,503	629	3.0	992,537	392,355	39.5	

※ 전년대비 가입실적

- 주택 : 2.8% 증가 (20년 612건, 21년 629건)
- 온실 : 49% 증가 (20년 263,216m², 21년 392,355m²)

2) 정선군민 안전보험 가입·운영

(가) 정선군민 안전보험 개요

- 정선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2. 3. 1. ~ 2023. 2. 28.(1년간)
- 피보험자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기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T.1644-9666)

(라) 보험담보 및 보상한도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정선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익사사고사망	정선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정선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급~5급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의사상자지원비용	정선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30)(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 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 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 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인당 3,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 망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 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개 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가입할 수 없음(상법 제732조)

※ 일부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됨

-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

**♣ 공시 관련사항 문의 및 의견 제출은 정선군 안전과로
(전화 : 033-560-232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